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76호

2018. 9. 10.

건 명	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(환경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안연월일	2018. 8. 28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8. 28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상의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결정하는 주거밀집지역의 주택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수립하여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고,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 주기(5년)를 규정하여 변동사항 반영 및 가축사육 제한 예외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논산시 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주거밀집지역의 주택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세부적인 정의 정립(제2조제8호)
- 나.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 주기(5년) 추가(제6조제2항)
- 다. 가축사육 제한 예외 규정 보완(제8조제2항)

□ 검토의견

○「지방자치법」제22조,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(가축사육의 제한 등)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77호

2018. 9. 10.

건 명	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(환경과)	· 설치 및 관리 조	스례 일부개정조례안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안연월일	2018. 8. 28.
소 관 위 원 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8. 28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(제8조제1항, 2017.5.8. 공포, 2018.1.1.시행)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・관리자가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도록 바뀌었으나,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규제 완화의 혜택을 주민이 받지 못함

□ 주요내용

O 상위 법령에 맞게 공중화장실 시설물 적용범위를 완화할 수 있는 내용 추가(제12조제1항)

□ 검토의견

○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,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(개방화장실의 지정 등)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